

청주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172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김교형, 신인순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용기, 김윤연, 이석기, 최한얼

변 론 종 결 2021. 4. 15.

판 결 선 고 2021. 5. 27.

제1 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9가단3705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피고와 A 사이의 2018. 3. 26.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은 46,646,43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6,646,430원 및 그 중

38,638,699원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명백한 착오 또는 오기로 보이는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4행의 “227,754,4468원”을 “227,754,468원”으로, 6쪽 19행의 “대하어”를 “대하여”로, 9쪽 9행의 “아니 되고”를 “아니 되는바”로, 10쪽 16행의 “2018. 9. 18.자”를 “2018. 3. 26.자”로 각 고쳐 쓴다.

3.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형식적으로는 피고가 (주)D(이하 ‘D’라고만 한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D와의 합의로 A의 임차보증금을 피고의 임차보증금으로 처리하였지만, 이는 자금관계를 단순히 한다는 취지였고 실제로 피고가 A로부터 채권을 양수받겠다는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고와 A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A와 피고 사이에는 임차명의 대여약정 또는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가 D에 지급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을 A가 피고를 대리하여 바로 D로 지급한 것인바, A는 피고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상당의 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A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A는 2014. 11. 28. D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7,3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이 사건 사업장에서 미용실을 운영해 왔고, 2018. 3. 26.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D와 피고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7,3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임차보증금을 피고가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2014. 11. 28.자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A가 D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 7,300만 원을 피고의 임차보증금으로 처리하여 전용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주장과 같이 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실제 체결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임차보증금 전용행위로 인해 A의 D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피고에게 이전하게 된바, 위와 같은 행위 자체가 A가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A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A와 사이에 체결된 임차명의 대여약정 또는 전대차계약에 따라 D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위와 같은 임차보증금 전용행위로 인해 A의 D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이상 A의 책임재산이 감소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행위로 A가 피고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상당의 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종류, 변제자의 자력, 담보가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유나, 판사 이성기, 판사 오태환

별 지

피고 []가 소외 주식회사 []와 충북
충주시 [](충주점 3층 미용실코너)에 관하여 2014. 11. 28. 체결한 상가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73,000,000원, 총계약면적 166.31㎡,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6. 2. 29.까지)에 따라 피고 []가 주식회사 []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73,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 끝.